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가단1147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0. 11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,288,504원 및 위 돈 중 4,383,967원에 대하여는 2020. 3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.545%의, 2,105,096원에 대하여는 2020. 3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원고의 C,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 법원의 2020. 8. 20.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정되었다)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: 피고는 2020. 5. 8.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의 C,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고,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.

판사 손인희

별지